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보

<http://www.daedeok.go.kr>

제2023-36호
2023. 7. 7.(금)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첩업무 규정(훈령 제485호) 1

고 시(2)

-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3-69호) ... 10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70호) 22

공 고(6)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3-731호) 23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741호) 27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공고 제2023-742호) 29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758호) 3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759호) 37
-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람(공고 제2023-761호) ... 38

차 례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750호) 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754호) 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755호) 53

행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속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3-756호) 58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3-760호) 65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첩업무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첩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첩업무 규정」 및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행정안전국장은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② 방첩담당관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접촉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대전광역시를 경유하여 국가정보원 지부로 알려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원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원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

으로부터 교육·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방첩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공관원 등 접촉 신청서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전화번호)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접촉목적				

년월일

신청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외국공관원(정보기관 등) 접촉결과 보고서

접외국공관원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전화번호)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접촉결과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 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서

접촉대상 외국인 (내국인)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연락처)		
	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 방법	
접촉사유 (접촉 요청자)			향후 접촉 일정		
특이사항					

※ 국가기밀 등을 탐지·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년 월 일

접촉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 신청서

접촉대상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연락처)		
	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 요청자		
접촉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 방법	
접촉목적 및 지원자료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1353호, 2020. 12. 31. 개정, 2021. 1. 1. 시행) 및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행정안전부훈령 제185호, 2021. 3. 12. 제정, 2021. 3. 12. 시행)에 따라 방첩업무의 중요성, 법령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방첩업무의 목적, 용어 및 방첩담당관의 임명·역할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외국인·외국정보기관원의 접촉절차 및 특이사항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방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 - 69호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74-1번지(통매바위어린이공원), 중리동 435-1번지(다정어린이공원), 목상동 174번지(여태말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통매바위 어린이공원

1.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증 감	최 초 결정일	비 고
		통매바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74-1번지	1,858.4	-	1972.11.06. 건설부 공고 제 84호	

1.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통매바위 어린이공원	○ 도로 및 광장 : 증 115.1㎡ (당초 365.9㎡→변경 481.0㎡)	○ 녹지면적 감소로 인한 도로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휴게쉼터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유흥시설 면적 감소 ○ 시설 변경으로 인한 편의시설 면적 증가 ○ 시설면적 증가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 휴양시설 : 증 33.3㎡ (당초 234.0㎡→변경 267.3㎡)	
	○ 유흥시설 : 감 19.0㎡ (당초 338.8㎡→변경 319.8㎡)	
	○ 편의면적 : 증 3.8㎡ (당초 6.3㎡→변경 10.1㎡)	
	○ 녹지면적 : 감 133.3㎡ (당초 906.0㎡→변경 772.7㎡)	

1.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공원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시설면적	녹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858.4	952.4	906.0	84.6	84.6	시설율 51.25%
변경	1,858.4	1,085.7	772.7	84.6	84.6	시설율 58.42%
증·감	-	증133.3	감133.3	-	-	증7.17

1.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858.4	1,858.4	-	-	23.8	증23.8	-	23.8	증23.8	100.00	
시설소계		952.4	1,085.7	증133.3	-	23.8	증23.8	-	23.8	증23.8	58.42	
도로 및 광장	도로	72.3	303.2	증230.9	-	-	-	-	-	-	16.31	
	광장	298.6	177.8	감115.8	-	-	-	-	-	-	9.57	
휴양시설		234.0	267.3	증33.3	84.6	84.6	-	84.6	84.6	-	14.38	
유흥시설		338.8	319.8	감19.0	-	-	-	-	-	-	17.21	
운동시설		-	-	-	-	-	-	-	-	-	-	
편의시설		6.3	10.1	증3.8	-	-	-	-	-	-	0.54	
관리시설		7.5	7.5	-	-	-	-	-	-	-	0.4	
녹지		906.0	772.7	감133.3	-	-	-	-	-	-	41.58	

1.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분		시설면적 (㎡)									구성비 (%)	비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858.4	1,858.4	-	84.6	84.6	-	84.6	84.6	-	100.00	49개소
시설소계		952.4	1,085.7	증133.3	84.6	84.6	-	84.6	84.6	-	58.42	
도로 및 광장	소계	365.9	481.0	증115.1	-	-	-	-	-	-	25.9	
	도로	72.3	303.2	증230.9	-	-	-	-	-	-		
	광장	293.6	177.8	감115.8	-	-	-	-	-	-		
휴양 시설	소계	234.0	267.3	증33.3	84.6	84.6	-	84.6	84.6	-	14.4	13개소
	휴게공간	118.5	151.8	증33.3	-	-	-	-	-	-		1개소
	노인정	84.6	84.6	-	84.6	84.6	-	84.6	84.6	-		1개소
	파고라	30.9	30.9	-	-	-	-	-	-	-		1개소
	정자	-	-	-	-	-	-	-	-	-		1개소
	앉음벽	-	-	-	-	-	-	-	-	-		4개소
	등의자	-	-	-	-	-	-	-	-	-		5개소
유희 시설	소계	338.8	319.8	감19.0	-	-	-	-	-	-	17.2	9개소
	아이스하키	338.8	319.8	감19.0	-	-	-	-	-	-		1개소
	조합놀이대	-	-	-	-	-	-	-	-	-		1개소
	그네	-	-	-	-	-	-	-	-	-		1개소
	시소	-	-	-	-	-	-	-	-	-		1개소
	그물놀이대	-	-	-	-	-	-	-	-	-		1개소
	흔들놀이대	-	-	-	-	-	-	-	-	-		2개소
	자전거놀이	-	-	-	-	-	-	-	-	-		2개소
운동 시설	소계	-	-	-	-	-	-	-	-	-		5개소
	운동기구	-	-	-	-	-	-	-	-	-		5개소
편의 시설	소계	6.3	10.1	증3.8	-	-	-	-	-	-	0.5	2개소
	비상급수시설	6.3	6.3	-	-	-	-	-	-	-		1개소
	자전거보행대	-	-	-	-	-	-	-	-	-		
	계단	-	3.8	증3.8	-	-	-	-	-	-		1개소

구 분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고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관리 시설	소 계	7.5	7.5	-	-	-	-	-	-	-	0.4	22개소
	공 원 등	-	-	-	-	-	-	-	-	-		5개소
	C C T V	-	-	-	-	-	-	-	-	-		2개소
	해충퇴치기	-	-	-	-	-	-	-	-	-		1개소
	분 전 함	-	-	-	-	-	-	-	-	-		1개소
	전기제어판	7.5	7.5	-	-	-	-	-	-	-		1개소
	안 내 판	-	-	-	-	-	-	-	-	-		2개소
	표 시 석	-	-	-	-	-	-	-	-	-		1개소
	볼 라 드	-	-	-	-	-	-	-	-	-		3개소
	정 원 등	-	-	-	-	-	-	-	-	-		6개소
누 지		906.0	772.7	감133.3	-	-	-	-	-	-	41.6	

1.6.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로시설조사

1) 도로결정(변경) 총괄조사

구 분	등 급	폭원(M)	기 정			변 경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5~7.0	2	10.5	72.3	4	87.5	303.2	-

2) 도로결정(변경) 세부조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10.5	72.3				
변경	합 계				87.2	303.2				
기정	소로	3	1	7.0	6.1	42.9	진입로	진입로	광장	
변경	소로	3	1	5.8	5.5	34.7	진입로	진입로	광장	
기정	소로	3	2	6.4	4.4	29.4	연결로	진입로	광장	
변경	소로	3	2	4.7	15.0	87.9	진입로	진입로	소로3-4	
신설	소로	3	3	1.5~3.0	17.5	35.6	진입로	진입로	소로3-4	
신설	소로	3	4	6.0	49.5	145.1	연결로	소로3-2	소로3-2	

□ 관계도면 : 게재생략

2. 다정어린이공원

2.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증 감	최 초 결정일	비 고
		다정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리동 435-1번지	1,506.4	-	1987.09.12. 건설부 공고 제 438호	

2.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다 정 어린이공원	○ 도로 및 광장 : 증 186.6㎡ (당초 309.9㎡→변경 496.5㎡) ○ 휴양시설 : 감 66.3㎡ (당초 66.3㎡→변경 0㎡) ○ 유희시설 : 증 90.2㎡ (당초 172.7㎡→변경 262.9㎡) ○ 운동시설 : 감 328.5㎡ (당초 328.5㎡→변경 0㎡) ○ 편의면적 : 증 23.8㎡ (당초 0㎡→변경 23.8㎡) ○ 녹지면적 : 증 94.3㎡ (당초 628.9㎡→변경 723.2㎡)	○ 시설 변경으로 인한 도로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휴양시설 면적 감소 ○ 시설 변경으로 인한 유희시설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운동시설 면적 감소 ○ 시설 변경으로 인한 편의시설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2.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사

구분	공 원 면 적 (㎡)			건 축 면 적 (㎡)		비 고
	계	시설면적	녹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506.4	877.5	628.9	-	-	시설율 58.25%
변경	1,506.4	783.2	723.2	23.8	23.8	시설율 51.99%
증·감	-	감94.3	증94.3	증23.8	증23.8	감6.26

2.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 총괄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건 축 규 모(㎡)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506.4	1,506.4	-	-	23.8	증23.8	-	23.8	증23.8	100.00	
시설소계		877.5	783.2	감94.3	-	23.8	증23.8	-	23.8	증23.8	52.0	
도로 및 광장	도로	179.5	325.2	증145.7	-	-	-	-	-	-	21.6	
	광장	130.4	171.3	증40.9	-	-	-	-	-	-	11.4	
휴양시설		66.3	-	감66.3	-	-	-	-	-	-	-	
유희시설		172.7	262.9	증90.2	-	-	-	-	-	-	17.4	
운동시설		328.5	-	감328.5	-	-	-	-	-	-	-	
편익시설		-	23.8	증23.8	-	23.8	증23.8	-	25.4	증23.8	1.6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628.9	723.2	증94.3	-	-	-	-	-	-	48.0	

2.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고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06.4	1,506.4	-	-	23.8	증23.8	-	23.8	증23.8	100.00	
시설소계		877.5	783.2	감94.3	-	23.8	증23.8	-	23.8	증23.8	52.0	
도로 및 광장	소 계	309.9	496.5	증186.6	-	-	-	-	-	-	33.0	
	도 로	179.5	325.2	증145.7	-	-	-	-	-	-		
	광 장	130.4	171.3	증40.9	-	-	-	-	-	-		
휴양 시설	소 계	66.3	-	감66.3	-	-	-	-	-	-	-	12개소
	휴 게 공 간	-	-	-	-	-	-	-	-	-	-	1개소
	평 상	-	-	-	-	-	-	-	-	-	-	-
	등 의 자	-	-	-	-	-	-	-	-	-	-	9개소
	평 의 자	-	-	-	-	-	-	-	-	-	-	-
	파 고 라	66.3	-	감66.3	-	-	-	-	-	-	-	1개소
	정 자	-	-	-	-	-	-	-	-	-	-	1개소

구 분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고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유희 시설	소 계	172.7	262.9	증90.2	-	-	-	-	-	-	17.4	9개소
	놀 이 터	172.7	262.9	증90.2	-	-	-	-	-	-		1개소
	조합놀이대	-	-	-	-	-	-	-	-	-		1개소
	그 네	-	-	-	-	-	-	-	-	-		1개소
	시 소	-	-	-	-	-	-	-	-	-		2개소
	흔들놀이대	-	-	-	-	-	-	-	-	-		4개소
운동 시설	소 계	328.5	-	감328.5	-	-	-	-	-	-	-	10개소
	운 동 공 간	328.5	-	감328.5	-	-	-	-	-	-		-
	배드민턴장	-	-	-	-	-	-	-	-	-		-
	농 구 대	-	-	-	-	-	-	-	-	-		-
	철 봉	-	-	-	-	-	-	-	-	-		-
	운 동 기 구	-	-	-	-	-	-	-	-	-		7개소
	사다리시설	-	-	-	-	-	-	-	-	-		3개소
편익 시설	소 계	-	23.8	증23.8	-	23.8	증23.8	-	23.8	증23.8	1.6	1개소
	화 장 실	-	23.8	증23.8	-	23.8	증23.8	-	23.8	증23.8		1개소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	-		11개소
	공 원 등	-	-	-	-	-	-	-	-	-		6개소
	C C T V	-	-	-	-	-	-	-	-	-		1개소
	분 전 함	-	-	-	-	-	-	-	-	-		1개소
	안 내 판	-	-	-	-	-	-	-	-	-		2개소
	표 지 석	-	-	-	-	-	-	-	-	-		1개소
	볼 라 드	-	-	-	-	-	-	-	-	-		2개소
녹 지		628.9	723.2	증94.3							48.0	

2.6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로시설조서

1) 도로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등 급	폭원(M)	기 정			변 경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0~3.0	3	74.4	179.5	5	128.9	321.2	-

2) 도로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74.4	179.5				
변경	합 계				128.9	321.2				
기정	소로	3	1	3.0	29.5	89.5	진입로	진입로	진입로	
변경	소로	3	1	2.5	4.2	12.5	진입로	진입로	소로3-5	
기정	소로	3	2	2.0	5.3	10.6	연결로	소로3-1	운동공간	
변경	소로	3	2	2.0	4.0	10.2	연결로	진입로	소로3-5	
기정	소로	3	3	2.0	39.6	79.4	진입로	진입로	소로3-1	
변경	소로	3	3	2.0	1.7	4.3	연결로	진입로	소로3-5	
신설	소로	3	4	2.5	1.7	5.0	진입로	진입로	소로3-5	
신설	소로	3	5	2.0	117.3	289.2	연결로	연결로	연결로	

□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여태말어린이공원

3.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증 감	최 초 결정일	비 고
		여태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74번지	1,808.2	-	1990. 06. 20. 건설부 공고 제 383호	

3.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여 태 말 어린이공원	○ 도로 및 광장 : 증 61.7㎡ (당초 341.8㎡→변경 403.5㎡) ○ 휴양시설 : 증 1.9㎡ (당초 66.2㎡→변경 68.1㎡) ○ 유희시설 : 증 67.6㎡ (당초 190.4㎡→변경 258.0㎡) ○ 운동시설 : 증 124.6㎡ (당초 0㎡→변경 124.6㎡) ○ 편의면적 : 증 38.6㎡ (당초 134.3㎡→변경 172.9㎡) ○ 녹지면적 : 감 294.4㎡ (당초 1,075.5㎡→변경 781.1㎡)	○ 녹지면적 감소로 인한 도로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휴양시설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유희시설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운동시설 면적 증가 ○ 시설 변경으로 인한 편의시설 면적 증가 ○ 시설면적 증가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3.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공 원 면 적 (㎡)			건 축 면 적 (㎡)		비 고
	계	시설면적	녹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808.2	732.7	1,075.5	102.4	157.6	시설율 40.52%
변경	1,808.2	1,027.1	781.1	89.1	142.6	시설율 56.80%
증·감	-	증294.4	감294.4	감13.2	감15.0	증16.28

3.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 총괄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건 축 규 모(㎡)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808.2	1,808.2	-	102.4	89.1	감13.3	157.6	142.6	감15.0	100.00	
시설소계		732.7	1,027.1	증294.4	102.4	89.1	감13.3	157.6	142.6	감15.0	56.8	
도로 및 광장	도로	212.7	403.5	증190.8	-	-	-	-	-	-	22.3	
	광장	129.1	-	감129.1	-	-	-	-	-	-	-	
휴양시설		66.2	68.1	증1.9	-	-	-	-	-	-	3.8	
유희시설		190.4	258.0	증67.6	-	-	-	-	-	-	14.2	
운동시설		-	124.6	증124.6	-	-	-	-	-	-	6.9	
편익시설		134.3	172.9	증38.6	102.4	89.1	감13.3	157.6	142.6	감15.0	9.6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1,075.5	781.1	감294.4	-	-	-	-	-	-	43.2	

3.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고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808.2	1,808.2	-	102.4	89.1	감13.3	157.6	142.6	감15.0	100.00	
시설소계		732.7	1,027.1	증294.4	102.4	89.1	감13.3	157.6	142.6	감15.0	56.8	
도로 및	소계	341.8	403.5	증61.7	-	-	-	-	-	-	22.3	
	도로	212.7	403.5	증190.8	-	-	-	-	-	-		
광장	광장	129.1	-	감129.1	-	-	-	-	-	-		
휴양 시설	소계	66.2	68.1	증1.9	-	-	-	-	-	-	3.8	15개소
	휴게공간	34.2	68.1	증33.9	-	-	-	-	-	-		1개소
	정자	-	-	-	-	-	-	-	-	-		1개소
시설	파고라	32.0	-	감32.0	-	-	-	-	-	-		1개소
	평의자	-	-	-	-	-	-	-	-	-		-
	등의자	-	-	-	-	-	-	-	-	-		12개소

구 분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고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유희 시설	소계	190.4	258.0	증67.6	-	-	-	-	-	-	14.2	7개소
	놀이터	190.4	258.0	증67.6	-	-	-	-	-	-		1개소
	조합놀이대	-	-	-	-	-	-	-	-	-		1개소
	시소	-	-	-	-	-	-	-	-	-		-
	그네	-	-	-	-	-	-	-	-	-		1개소
	회전무대	-	-	-	-	-	-	-	-	-		1개소
	흔들놀이대	-	-	-	-	-	-	-	-	-		3개소
운동 시설	소계	-	124.6	증124.6	-	-	-	-	-	-	6.9	8개소
	운동공간	-	124.6	증124.6	-	-	-	-	-	-		1개소
	운동기구	-	-	-	-	-	-	-	-	-		3개소
	사이클도로	-	-	-	-	-	-	-	-	-		4개소
편익 시설	소계	134.3	172.9	증38.6	102.4	89.1	감13.2	157.6	142.6	감15.0	9.6	4개소
	경로당	87.4	120.0	증32.6	87.4	74.1	감13.2	142.6	127.6	감15.0		1개소
	화장실	30.5	30.5	-	15.0	15.0	-	15.0	15.0	-		1개소
	음수대	16.4	16.4	-	-	-	-	-	-	-		1개소
	자연기념관	-	6.0	증6.0	-	-	-	-	-	-		1개소
관리 시설	소계	-	-	-	-	-	-	-	-	-		22개소
	공원등	-	-	-	-	-	-	-	-	-		6개소
	정원등	-	-	-	-	-	-	-	-	-		6개소
	CCTV	-	-	-	-	-	-	-	-	-		2개소
	안내판	-	-	-	-	-	-	-	-	-		3개소
	게시판	-	-	-	-	-	-	-	-	-		-
	볼라드	-	-	-	-	-	-	-	-	-		4개소
	표지석	-	-	-	-	-	-	-	-	-		1개소
녹 지		1,075.5	781.1	감294.4							43.2	

3.6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로시설조서

1) 도로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등 급	폭원(M)	기 정			변 경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0~4.5	7	72.6	212.7	4	102.2	403.5	-

2) 도로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72.6	212.7				
변경	합 계				102.2	403.5				
기정	소로	3	1	4.0	6.0	23.7	진입로	진입로	광장1-1	
변경	소로	3	1	4.0	4.9	26.1	진입로	진입로	소로3-3	
기정	소로	3	2	3.0	9.0	37.2	진입로	진입로	유흥시설	
변경	소로	3	2	1.2	4.3	7.0	진입로	진입로	유흥시설	
기정	소로	3	3	3.0	7.6	23.5	진입로	진입로	소로3-4	
변경	소로	3	3	3.0~4.5	69.0	310.9	진입로	진입로	진입로	
기정	소로	3	4	3.0	25.6	77.9	연결로	녹지	광장1-1	
변경	소로	3	4	2.0	24.0	59.6	연결로	소로3-3	소로3-3	
기정	소로	3	5	2.0	19.7	38.8	연결로	소로3-2	광장1-1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6	3.0	2.5	5.0	연결로	소로3-1	녹지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7	3.0	2.2	6.6	연결로	화장실	소로3-3	
폐지	-	-	-	-	-	-	-	-	-	

□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중리동 388-17, -6	중리동로41번길 28	2023. 7. 7.	건물신축	중리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대덕구에서 시행 중인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점포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점포운영과 함께 상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 사업위치 :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붙임1]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2. 31.
- 총사업비 : 17백만원 / 각 상가당 최대 500만원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상가건물 소유주(임대인)
*대상범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 아파트 내 상가제외) [붙임2]
- 지원내용 : 건물 외부 개선 및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 리모델링 지원

3. 신청조건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건물 소유주(임대인)
 - 아파트 지원 불가

- 무허가·불법 건축물 지원 불가
- 임차인 전원 동의 및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필수
 - ※ 임차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상생협약 위반 시 보조금 반환 조치
 - ☞ 상가점포 소유주(임대인) : 5년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
- 대전광역시 추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불가

4. 지원금액

- 리모델링 총 비용의 10%지원(각 상가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 = 보조금(10%) + 자부담(90%) = 설계비 + 시설공사비

- (예시)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액

구 분	상가 리모델링	비 율
총 사업비	5,000만원	100%
보 조 금	500만원	10%
자 부 담	4,500만원	90%

- 최대 지원금 초과될 시 초과된 전액은 자부담해야 하며, 최대 지원금 미만 책정되었을 경우 그 총사업비는 보조금(10%) + 자부담(90%)로 산정.
[예시] 총사업비 300만원 = 30만원(보조금 신청액) + 270만원(자부담)

5. 공사범위

- 상가 외관 개선 및 내구성,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

건물	지붕	☐ 보수	☐ 방수	☐ 우수배관	
	외벽	☐ 도장	☐ 보수	☐ 외부단열	
	창호	☐ 교체	☐ 보수		
	옥상	☐ 보수	☐ 방수		
외부 공간	담장	☐ 철거	☐ 보수	☐ 재설치	☐ 높이 감소
	대문	☐ 철거	☐ 보수	☐ 재설치	
	조경	☐ 보수	☐ 재설치	☐ 신설	☐ 담장,대문철거 가점(담장,대문 철거시)

○ 접수기간 : 2023. 7. 7.(금) ~ 7. 21.(금) 18:00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대덕구청 별관 3층 도시활력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별관 3층 도시활력과(오정동)

-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골목점포 특화 교육·컨설팅 수요자 우선 선발
- 심의결과 부적격 또는 후순위자의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사업절차별 제출서류 [붙임3]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 대덕구청 도시활력과 ☎ 042-608-6416, FAX. 042-608-3850) 끝.

제1임1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구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제1항 및 제3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차량 소유자에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제 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7. 7. ~ 2023. 7. 24.(17일간)
- 공고대상 / 3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 사유
1	정*희	88가96**	대전광역시 중구 대중로 ***번길 37 (문창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2	사*적**조합 도원참**니눔	80가3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번길 23 (오정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 사유
1	나*화	88다62**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로 1*9-19 (삼괴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4,200	폐문 부재

4. 공시송달내용

가. 「미세먼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과통지서의 경우, 만약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4) 끝.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사업명: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3. 열람기간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3. 7. 7. ~ 2023. 7. 24.
-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 042-608-5224)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등의 표시(붙임 참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135번지 외 2필지
- 6. 기타: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끝.

[붙임]
□ 토지(물건)조서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지분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단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덕구 이현동	135	답		69	m ²	1/1	정*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1326번길 *** --* (이현동)				
2	대덕구 이현동	136	답		132	m ²	1/1	정*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1326번길 *** --* (이현동)				
3	대덕구 이현동	161	답		15.6	m ²	1/1	문*락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25번길 ** (월평동), ***호				

※ 위 토지상 지장물건 포함

의견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기간 : 2023. 7. 7. ~ 7. 31. (24일간)
- 공고대상 : 별첨
-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3. 7.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 및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끝.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이*연	01주3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5,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폐문부재
신*식	28로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조*호	66구12**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519번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준	05도5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209번길 13,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희	45구7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7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유*선	51모5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11번길 86-1,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진	87두2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윗말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이사불명
이*경	110여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희	16버89**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구역평촌1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섭	29거59**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28,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폐문부재
(주)코엠*****	163나7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최*창	14우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741,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오*하	26가31**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2번길 80,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정*현	282오7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최*익	231어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이*샘	36조4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폐문부재
김*규	337도7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원연장1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수취인불명
김*완	32더3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7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김*희	45구7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7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박*연	63루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24,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이사불명
김*민	40러97**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263, *층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7. 7. ~ 2023. 7. 21.(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대전로 1162 (오정동) / 비룡각 (갑○성)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비룡각(사업자등록 폐업일 2023. 7. 5.)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공일자 : 2023. 7. 4.(화)
-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 이용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자치단체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3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3. 11월 예정)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추가 및 정비함(안 별표).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전화 : 042-608-5455, FAX : 042-608-3851, E-mail : shesoon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행정과 담당자 신서연(전화 : 042-608-54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2항 ”을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상향 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2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의견 :

내용	의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배출용량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사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정비함(안 별표 1).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정비함(안 별표 2).
 - 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정비함(안 별표 3).
 - 라. 상위법에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14조 및 제20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전화 : 042-608-6843, FAX : 042-608-3834, E-mail : ofitself@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박수진(전화 : 042-608-68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시행규칙 제16조의6”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수거방법	대 상	용량	금 액	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	단독,연립 등	3ℓ	180원	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 가능
		5ℓ	300원	
	소형음식점 등	10ℓ	600원	
		20ℓ	1,200원	
	공동주택	120ℓ	7,200원	

(주)무게단위(kg)로 계량하여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리터당 부피
환산계수 0.75kg(1 ℓ = 0.75kg)을 적용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별표 1의 수수료 적용에서
제외한다.

[별표 2]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색 상	종 류	규 격	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	흰 색	3ℓ	가로120mm×세로30mm	
	노랑색	5ℓ		
	주황색	10ℓ		
	청 색	20ℓ		
	빨강색	120ℓ		

(주)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인쇄문안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ℓ)	불 이 는 곳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ℓ)
바코드 이 부분이 훼손되면 스티커는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연락처)		수거되지 않습니다. 바코드 스티커는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별표 3]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판매단위	용량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	매	3ℓ	171	9	180
	매	5ℓ	285	15	300
	매	10ℓ	570	30	600
	매	20ℓ	1,140	60	1,200
	매	120ℓ	6,840	360	7,200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 5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07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전화 : 042-608-5493, FAX : 042-608-3851, E-mail :

alrud721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담당자 박미경(전화 : 042-608-54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5세”를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 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 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 ~ 10. (생략)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 ----- -----. 1. (현행과 같음) 2. <u>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65세</u> ----- 3. ~ 10.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7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속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6조(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른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속 지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지속 지정목적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규제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속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현황

시 장 명	위 치	인정일자	대지면적(㎡)	비 고
송 촌 시 장	송촌동 476-1 외	2005. 4. 08.	2,652	인정시장
중 리 시 장	중리동 368-1 외	2005. 4. 08.	12,316	인정시장
법 동 시 장	법동 198-1 외	2005. 4. 25.	12,070	인정시장
신탄진시장	석봉동 353-1 외	2005. 4. 08.	25,680	인정시장

3. 지정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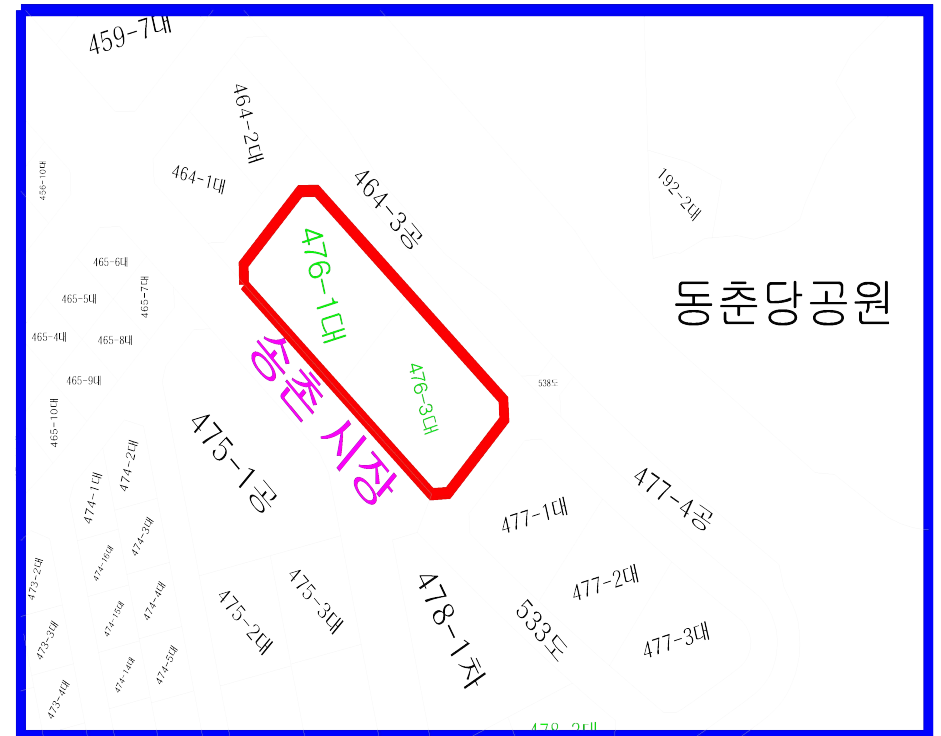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예고기간 : 2023. 7. 7.(금) ~ 7. 28.(금)(22일간)
5. 예고방법 : 대덕구 홈페이지(<https://www.daedeok.go.kr>) 고시·공고 게시
6. 관련도서 열람방법 : 대덕구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 열람(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별관 2층)
7.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3. 7. 28.(금) 18:00까지
※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나. 제출방법
 - 우편: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경제과
 - E-mail: yeonsu0920@korea.kr
 - 다. 문의처: 대덕구 경제과 (☎042-608-4523 / FAX042-608-3831)
 - 라. 기재내용: 붙임2 의견제출서에 의함

- 붙임 1.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4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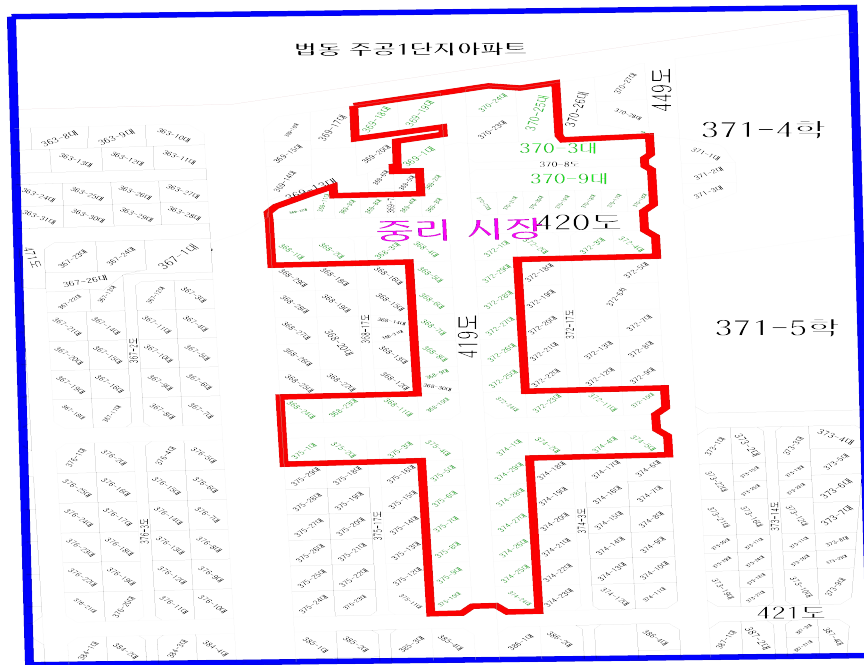
- 시장명 : 송촌시장
- 인정일자 : 2005. 4. 8.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76-1, 476-3
- 대지면적 : 2,652㎡
- 지정목적 : 지역 전통상권 보존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 도모
- 전통시장 위치도



※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중리시장
- 인정일자 : 2005. 4. 8.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68-1 외 / 주요지번 참조
- 대지면적 : 12,316㎡
- 지정목적 : 지역 전통상권 보존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 도모
- 전통시장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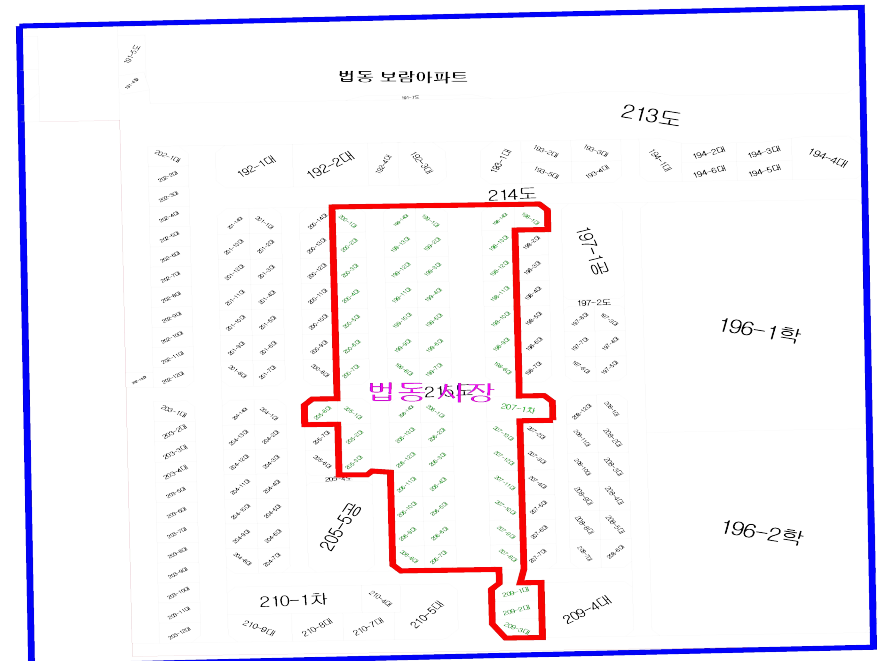


※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 ◆ 주요지번 : 중리동 368-1~11, 23, 24. 중리동 369-1~4, 8, 9, 11, 12, 18, 19.
중리동 370-3, 9, 16~22, 24, 25. 중리동 372-1~4, 10~11, 23~29.
중리동 374-1, 2, 4, 5, 24~29.
중리동 375-1~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법동시장
- 인정일자 : 2005. 4. 25.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98-1 외 / 주요지번 참조
- 대지면적 : 12,070㎡
- 지정목적 : 지역 전통상권 보존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 도모
- 전통시장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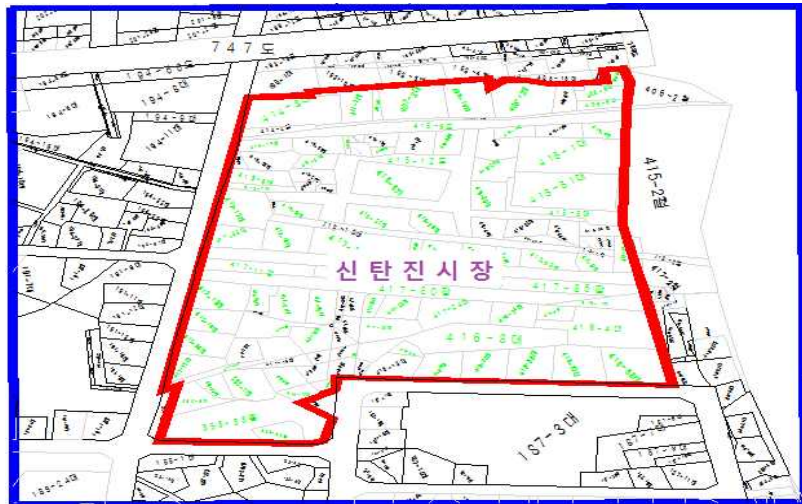


※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 ◆ 주요지번 : 법동 198-1, 198-8~14. 법동 199-1~14. 법동 200-1~8.
법동 205-1~3, 8. 법동 206-1~14. 법동 207-8~13. 법동 209-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 장 명 : 신탄진시장
- 인정일자 : 2005. 4. 8.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53-1 외 / 주요지번 참조
- 대지면적 : 25,680㎡
- 지정목적 : 지역 전통상권 보존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 도모
- 전통시장 위치도



※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

- ◆ 주요지번 : 석봉동 353-1,5,32,33,77. 석봉동 406-3,5,6,12,19.
 석봉동 407-3,4. 석봉동 411-7. 석봉동 413-6. 석봉동 414-3.
 석봉동 415-1,4,5,8,9,11,12,18,19,21,24,26~30,44,50,51
 석봉동 416-1,4,5,8,12,18,19,21,23,24,,39,55~58.
 석봉동 417-11~24, 33~35,43,46,51,52,54,72~73,76,77,80, 84,85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속 지정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소하천(신대천)의 각종 정보 수집(유속, 유량, 수위 등)을 통한 재해 예방 목적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4. 시행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5.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7. 7. ~ 2023. 7. 28.(21일간)

7. 설치 장소(예정)

연번	행정동	주 소	수 량	비 고
1	신대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502-3 일원	1	
합 계(1개소)			1	

※ 행정예고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수량)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8.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 예정 위치 인근 촬영범위내 24시간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나. 제출기한 : 2023. 7.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 문의전화 : 042 - 608 - 5224 (팩 스 : 042 - 608 - 3844)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